

김치 제품의 수입자 라벨 표기 방법

조사회신일 : 2016.5.25

품목 : 김치(무첨가)

I. 상품개요

- 상품명
- 김치
- 상품 형태
- 배추김치(무첨가)

II. 수입자 라벨 표시안

1. 수입자 표기

명칭	배추김치
원재료명	배추, 절임원재료(무, 고추가루, 양파, 소금, 마늘, 설탕) * 정보 보호상 일부 성분은 생략함
내용량	
상미기간	Yyyy.mm.dd
보존방법	
원산국명	한 국
수입자	○○○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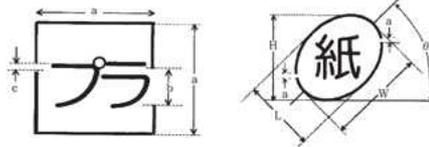
※ 원재료명 부분에 대하여 원재료명과 첨가물을 []로 구분하는 기재방법도 인정됩니다.
표기란의 크기와 전문가와의 상담을 고려한 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. 영양성분 표시

영양성분표시 (100g 당)			
에너지	kcal	탄수화물	g
단백질	g	식염상당량	mg
지질	g		

3. 문자 크기 및 재활용 마크

- 일괄 표시 및 영양 표시의 글자 크기가 8 포인트 이상임을 확인하십시오.
(표시가능면적이 대략 150㎢이하인 경우에는 5.5포인트 이상 활자 기재.)
- 플라스틱 마크의 한변의 높이 및 종이 마크의 높이는 6mm 이상입니다.
- 문자크기는 JIS Z8305규격 (1포인트=0.3514mm)에 따르십시오.



포장 트레이

외장

III. 기타사항

1. 참고 표기 사항

- 표시에 대하여 명확히 의무화 되어있는것은 아니으나 제품의 안전관리 차원에서 표시하는 것을 권장드리는 바입니다. 글자 크기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는 않으나, 사용자가 보기쉬운 크기로 표시하도록 해주십시오.
- 표시 사례
 - 본 제품에 사용되는 새우젓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새우와 게를 함께 포획하고 있습니다.
 - 본 제품의 제조과정에서는 **과 **을 사용하는 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.

2. 표시가 금지되어있는 사항

- 상품표시에 있어서 실제 상품보다 우량하거나 유리하게끔 오인할만한 사항을 표시해서는 안됩니다. 일부 식품은 식품표시기준 및 공정경쟁규약 등에 의하여 금지되어있습니다.
- 식품표기 기준에서의 금지표시
 - 실제 상품보다 현저하게 우량하거나 유리하게끔 오인할만한 사항을 표시해서는 안됩니다.
 - 내용과 모순되는 용어의 표시를 금지합니다.
 - 유아용 규격적용식품 이외의 식품은 유아용 규격적용식품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 또는 혼란을 주는 용어의 사용을 금지합니다.
 - 분별생산유통관리가 확인된 비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식품 이외의

- 식품은, 비유전자변형을 의미하는 용어의 사용을 금지합니다.
- 조직DNA기술을 이용하여 생산된 농산물에 속하는 작물 이외의 작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식품은 해당 농산물에 관하여 유전자변형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의 사용을 금지합니다.
 - 나트륨소금을 첨가한 식품은 나트륨량의 표시를 금지합니다.
 - 기능성 표지식품이외의 식품은 영양기능성식품에 대하여 별도의 금지표시가 있습니다.
 - 보건기능식품 이외의 식품은 보건기능식품과 혼동되는 명칭, 영양성분의 기능 및 특정 보건목적이 기대되는 듯한 용어사용을 금지합니다.
 - 시각장애인이 우유임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지붕형 종이팩 용기의 상단의 일부를 파내는 표시를 금지합니다.
 - 일본 농림규격의 등급심사를 통과한 식품 이외의 식품은 등급을 나타내는 용어의 사용을 금지합니다.
 - 그 외의 내용물을 오인시키는 문자, 그림, 사진 등의 표시를 금지합니다.

3. 관계법

식품표시기준

(http://www.caa.go.jp/foods/pdf/150320_kijyun.pdf)